

LIG

윤리·준법 연간 보고서 2023

2023. 5.

LIG Nex1 / 법무Compliance팀



목 차

목 차	1
■ 발간사	3
1. 리더십과 조직문화	4
1.1. 부패방지 공약.....	4
1.2. 부패방지 정책.....	12
1.3.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이행과 감독.....	13
2. 내부 통제	19
2.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19
2.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개선.....	20
2.3. 제보 조사 절차.....	21
2.4. 감사실/감사위원회.....	23
2.5. 부패 관련 사건 조사.....	23
2.6. 제보 조사의 결과.....	23
3. 임직원 지원	24
3.1. 부패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요.....	24
3.2. 임직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25
3.3. 부패방지 촉진을 위한 임직원 포상.....	26
3.4.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한 임직원과 제보자의 보호.....	26
3.5. 제보 채널.....	27
4. 이해상충	30
4.1. 이해상충 방지 규정.....	30
4.2. 이해상충 관리 절차.....	32
4.3. 공공부문 출신 직원 고용 정책.....	34
4.4. 정치인 고용 정책.....	34
5. 고객 연계	36
5.1. 후원 및 기부, 스폰서십, 로비.....	36
5.2. 선물 및 편의 제공.....	37
6. 공급망 관리	38

6.1. 협력회사 실사 개요.....	38
6.2. 협력회사 대상, 부패방지 정책 및 절차 수행 요구	39
6.3. 협력회사의 정보 및 제재	40
7. 제 3 자(대리인, 중개인, 합작투자 등)	41
7.1. 제 3 자 관련 정책	41
7.2. 제 3 자 실사 개요	42
7.3. 제 3 자 계약 상 부패방지조항	44
7.4. 제 3 자의 정보 및 제재.....	45
8. 절충교역 - N/A.....	46
9. 시장 관리.....	47
9.1. 고위험 시장 위험관리절차	47
9.2. 회사 정보	48
10. 2022 년도 주요 컴플라이언스 월별 활동.....	51
11. 기타.....	53
12. List of Evidence & Sources	54

■ 발간사

LIG넥스원 임직원 여러분,

LIG넥스원은 창립 이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기반한 윤리/준법경영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으로 윤리/준법경영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이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최근 기업의 ESG경영, 즉 환경과 기업의 책임, 나아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고, 국제 협의체에서는 끊임없이 기업에게 투명성을 강조하며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며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역시 윤리/준법경영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그 체계를 점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윤리/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 되도록 많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활동이 윤리/준법경영의 기틀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회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윤리/준법경영 활동을 모은 것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윤리/준법에 대한 가치를 공표하고, 회사의 위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회사의 윤리/준법경영의 실태에 대해 면밀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찰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여러 협의체에 참여하여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윤리/준법경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LIG넥스원 임직원 여러분은 본 보고서를 통하여 당사가 수행하는 Compliance 활동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LIG넥스원만의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지속되어 사회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것을 기대합니다.

LIG넥스원이 글로벌 방산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경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 리더십과 조직문화

1.1. 부패방지 공약

- 1) LIG 넥스원(이하 회사)은 매년 CEO가 부패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공개함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3 조

제 13 조 [선언 목적]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선언한다.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4 조

제 14 조 [선언 방법]

- ①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실천의지에 대하여 공식적인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연 1회 이상 회사 전체 임직원에게 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2) CEO 의 부패방지 메시지에는 부패는 조직 내 어떤 형태로든 용인되지 않으며,
회사가 적극적으로 부패방지를 지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윤리경영철학	규정	활동	신고센터
대표이사 실천 선언문			
01 뇌물 및 부패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적 또는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기존 또는 향후의 거래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지급을 제의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02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실천하겠습니다. 회사는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규정에 따른 처벌을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03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하는 직원이나 뇌물 및 부패사건을 신고한 직원 또는 제3자 및 공급업체 등의 직원들이 보호받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04 윤리/준법경영의 실천만이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법률과 윤리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식을 확립하겠습니다.			
05 회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와 관련 있고, 당사의 일을 맡아 하는 모든 제3자(에이전트, 협력업체, 중개인, J/V 등)가 뇌물 및 부패방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6 회사는 전직 혹은 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의 법(공직자 윤리법)을 준수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07 또한 회사는 정치인과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2) CEO Message(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실천의지 표명)



윤리/준법경영 실천의지 표명을 위한 CEO Message

임직원 여러분, 2023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계묘년(癸卯年)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성취와 번영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가 여전히 이어지는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의 우려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회사는 정도경영원칙을 견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관련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우리 회사는 당사의 행동 규범인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독려, 유효성평가 실시,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청렴한 풍토를 조성하여 임직원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함께 애써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금융 불안, 실물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등 당분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 한 해 임직원 모두 힘을 모아 당면한 어려움을 투명하게 극복하고 겸허히 내실을 다지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윤리/준법경영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윤리/준법경영 의지를 이해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첫째, 업무수행 시 지켜야 할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며, 위법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시, 승인, 묵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회사가 시행하는 모든 윤리/준법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셋째, 윤리/준법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고, 임직원,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제보자는 물론 비윤리적인 행위를 거부한 직원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임직원 개인이 법적·윤리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 회사의 지속성장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식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재할 것입니다.

LIG넥스원 여러분,

윤리/준법경영이라는 단단한 기반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회사의 건실한 경영을 이룰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월드컵 응원문구처럼 2023년 한 해 회사의 윤리/준법경영 의지를 실현하여 임직원 모두 투명하고 정직한 실천자로서 정도경영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6일
LIG넥스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지 찬

#3) 윤리경영 실천서약



윤리경영 실천서약

본인은 LIG넥스원 주식회사 임직원으로서 윤리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원동력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올바른 기업윤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
2. 고객, 주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다.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4. 협력업체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
5. 임직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예절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6.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 비리 행위도 하지 않으며, 임직원간 폭언 · 폭행 · 성희롱 및 기타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회사나 본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LIG넥스원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한다.
9. 업무 수행과정에서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및 부정 · 비리행위를 인지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부정 · 비리행위를 제안 또는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윤리경영실에 신고한다.
10. 회사 윤리규범 위반에 따른 조사가 진행될 경우, 회사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활동 등에 모든 협조를 다하며, 비윤리 행위에 대한 회사의 무관용 원칙에 동의하며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23년 02월 일

소 속 : _____

사 번 : _____

성 명 : _____





#4) 준법경영 실천서약



LIG Nex1
임직원 준법경영 실천서약

LIG Nex1

준법경영 실천서약

본인은 LIG넥스원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준법경영의 실천이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기업을 위한 수단이며 우리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높은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시 관련된 국내의 법규 및 사내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 ①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각국의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며, 담합, 불공정거래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또한 협력업체를 사업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하도급거래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 ② 부패방지 준수
사업상의 이득을 획득·유지할 목적으로 국내의 공무원 및 고객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제공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③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회사의 영업비밀, 기밀정보 등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배포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으며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고객 및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사용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⑤ 근로기준 준수
임직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기준, 고용평등, 노사관계 등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⑥ 환경·안전·보건 기준 준수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국제기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⑦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
재무·회계에 관한 기록이나 보고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업정보 및 중요사항 등을 성실하게 공시한다.
2. 본인은 위법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시·승인·묵인하지 아니하며,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Compliance팀)에 알리고 리스크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본인은 Compliance Program을 포함하여 회사가 시행하는 모든 준법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자율준수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소 속 : _____

사 번 : _____

성 명 : _____

2023 년 02 월 일

전자서명 완료

#5) 협력회사 윤리준법경영 레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존경하는 대표님,
 계묘년 새해를 맞아 대표님과 임직원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윤리·준법경영의 실천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임을 명심하여,
 윤리규범과 그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전화나 문자와 같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훈훈한 명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사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의 요구를 받으셨다거나
 불합리한 거래 또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당사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시에는 제보에 대한 비밀보장은 물론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뜻 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귀사 임직원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LIG넥스원 신고센터

2023년 1월 16일
 LIG넥스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지 찬

- 3) 회사는 현지채용인, 외국 국적의 임직원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가치를 알리고, 이를 실천하도록 요구함

#1) 윤리경영 실천서약(현지채용인, 외국 국적의 임직원용 영문 서약서, `22년 작성판)



LIG Nex1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서약

Ethical Management Practice Pledge

LIG Nex1



As an executive or employee of LIGNex1 Co., Ltd., I am proud of myself and pledge to abide by the follow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clean corporate culture free from corruption and ethical management based on
 honesty and integrity in establishing correct values and performing work.

1. I would work in an honest and sincere manner with the right business ethics and values.
2. I would respec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such as customers, shareholders, and business partners, and secure solid trust by providing value to stakeholders.
3. In carrying out domestic and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I would comply with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related laws, and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fair competition.
4. All transactions with subcontractors shall be conducted in a fair and equitable manner, and shall not engage in any form of unfairness or unfair conduct using a superior position.
5. I would create a sound organizational culture by performing all duties honestly and fairly, transparently maintaining company property, and observing workplace etiquette among co-workers.
6. I would not engage in unethical behaviors or actions that damage the dignity of the company or the person in relation to daily life and duties.
7. I would familiarize myself with the 'Code of Ethics' and 'Practice Guidelines for the Code of Ethics' and faithfully follow them.
8. In the event of any recognition of unfair trade, corruption, or misconduct by executives and/or employees
9. in the course of business performance, or any proposal or request for corruption or misconduct from a partner company, report it to the Legal Compliance Team immediately.
10. In the event of a company investigation due to violation of the Code of Ethics, I would cooperate with the company, including the submission of related data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agree to the company's zero tolerance principle for unethical behavior and also take the punishment.

#2) 준법경영 실천서약(현지채용인, 외국 국적의 임직원용 영문 서약서, '22년 작성판)



LIG Nex1
임직원 준법경영 실천서약

Compliance management Practice Pledge

LIG Nex1

As an executive or employee of LIGNex1 Co., Ltd. (the "Company"), I would deeply recognize that the practice of law-abiding managemen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Company's sustainable growth and acts as a core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and I pledge to abide by the following code of conduct in carrying out my work.

1. Based on a high level of compliance awareness, I thoroughly comply with the laws listed below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internal regulations related to business performance.
 - ① Compliance with related laws

(Complying with Fair Trade Act and Subcontracting Act)

 - I would comply with fair trade and subcontract-related laws, and do not engage in any acts that impede fair competition and trade, such as bid rigging or unfair subcontracting.

(Complying anti-corruption laws)

 - I would not provide or promise to provide any benefits, such as money, valuables, entertainment, etc. to stakeholders (including through third partie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customers.

(Complying with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Copyright Act)

 - I would comply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fense industry in conducting the Company's business.
 - I would not provide fals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s financial/management status or product quality/performance to customers, or submit forged or falsely written test reports.

(Complying with the Defense Business Act)

 - I would comply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fense industry in conducting the Company's business.
 - I would not provide fals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s financial/management status or product quality/performance to customers, or submit forged or falsely written test reports.

(Complying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I would comply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and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② Compliance with labor standards

I would respect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 employees and comply with labor-related laws such as labor standards, equality of employmen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 ③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safety/health standards

I would put the health and safety of employees first and comply with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law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workplace safety and health laws.
 - ④ Accurate accounting treatment and disclosure

I would record accounting-related records and reports accuratel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standards, and disclose corporate information and important matters faithfully.
2. I would not execute, instruct, approve, or condone illegal acts, and when I become aware of an illegal act, I would immediately report it to the Legal Compliance Team.
3. I would actively participate in all compliance management activities conducted by the Company, including the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and contribute to the spread of the voluntary compliance practice culture.

1.2. 부패방지 정책

1) 회사는 아래의 5 개 규정을 근거로,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함

- ① 윤리규범 [NEX1(M)-140-04]
- ② 윤리규범 실천지침 [NEX1(M)-141-01]
- ③ 준법통제기준 [NEX1(M)-140-08]
- ④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NEX1(S)-460-01]
- ⑤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NEX1(M)-141-02]

2) 상기 1)의 규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어디서나 접근 가능함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규정

기업소개	사업영역	지속가능경영	투자정보	인재채용	홍보센터
윤리/준법	상생경영	안전보건환경	인권/근로자	사회공헌	품질 경영
윤리경영철학		규정	활동	신고센터	
준법통제기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을 제정하여 Compliance Program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Compliance Program이란 임직원이 업무수행 시 관련법규를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준법경영활동입니다.					
윤리규범					다운로드 ↓
윤리규범 실천지침					다운로드 ↓
준법통제기준					다운로드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기준					다운로드 ↓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다운로드 ↓
윤리준법경영 보고서					다운로드 ↓

3) 부패방지 정책은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내외 법인 및 그 소속의 모든 임직원(비상임 이사 포함)에게 적용 가능함

4) 부패방지 정책은 국내외 공무원이나 기존 또는 향후의 모든 거래 상대방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급행료, 정치후원금 등 모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고 명시함

#1)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 4 조

제 4 조 금품 등의 제공금지

- ①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적 또는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업무 관련자, 기존 또는 향후의 모든 거래 상대방 등에게 금품 등의 지급을 제의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공무원, 업무 관련자, 기존 또는 향후의 모든 거래 상대방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별첨 1에서 규정한 '금품 등 제공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거나, 부패방지조직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 ③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라 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하 "급행료"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회사의 명의 및 자원을 활용한 정치후원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임직원이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회사와 무관하게 사인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적법한 수준의 정치후원 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
- ⑤ 회사의 임직원이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하여 업무 관련자 및 모든 거래 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한 금품 등 제공내역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타 관련 서류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3.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이행과 감독

- 1)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 운영 및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감사 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그 내용 반영 여부 확인 가능
-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을 임명하고, 회사와 관련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
 - ※ 회사는 1.2. 부패방지정책 1)에 근거하여,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준법지원인 또는 컴플라이언스 운영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에 따른 부패방지책임자가 있으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준법지원인이 상기 직책을 겸임함

#1) 상법 제 542 조의 13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명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준법통제기준 제 7 조

제 7 조 준법지원인의 임면

(1)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3)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4 조

제 4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선임한 준법지원인이 있고 별도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준법지원인이 자율준수관리자가 된다.

#4)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 3 조

제 3 조 부패방지조직 및 부패방지책임자

③ 회사의 부패방지활동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부패방지책임자'라 한다)가 총괄하여 관리한다. 회사에 준법통제기준 등에 따른 준법지원인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있고 별도의 부패방지책임자 지정이 없는 경우 준법지원인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부패방지 책임자가 된다.

- 3) 현재 회사는 법률상임고문(판사 출신, 법무실 임원)을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하였으며, 자율준수관리자와 부패방지책임자의 역할을 겸함

#1) 공시(사업보고서) -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사.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의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통제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성명 / 생년월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정 (19년월)	'86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판사 '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96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98 창원지법 통영지원(거제시, 고성군) 판사 '99 서울지방법원 판사 '00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무법인 태평양 '0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자문위원(~'05) '02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03), 서울시 중랑구 법륜고문 '03 대한변협 교육위원회 간사(~'05), 서울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07) '04 국무조정실 지적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 위원(~'05) '05 대한변협 지적재산권 위원회 위원, 서울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위원 '0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병원 특허분야 자문위원 '12~현재 LIG넥스원 법무실장	해당사항 없음

- 4) 준법지원인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및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 및 점검하여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정기적(1년 2회)으로 직접 보고함

#1) 준법통제기준 제 10 조

제 10 조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3)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

#2) 이사회 보고자료

이사회 제 호 보고 : '22년 하반기 Compliance Program 운영 결과 보고
1. 제안 사유 -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22년 하반기 Compliance Program 운영 결과를 보고함 2. 주요 내용 - Compliance 역량강화 분야 '22년 하반기 실적 및 '23년 계획 - Compliance 인식제고 분야 '22년 하반기 실적 및 '23년 계획 - Compliance 위험관리 분야 '22년 하반기 실적 및 '23년 계획 3. 관련 근거 -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기준」 제20조(이사회 보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획 및 운영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시(사업보고서) -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자.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일시	주요활동내역	처리결과
2022.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임명 및 운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8조)	- 자율준수협의회(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문 기구) 위원 임명 및 운영 * 의장 : 1명, 위원 : 5명
2022. 1. 2022. 9.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실시 (윤리규범 제4장)	- 법무Compliance팀, "윤리와 준법 문화 확산 및 준수" CEO 메시지 당사 인트라넷 공지
	협력회사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캠페인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법무Compliance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 화 실천" CEO Letter 협력사 발송
2022. 1. ~ 2.	전사 자율준수실천조직 운영(자율준수실천 리더와 실천자 임명) (준법통제기준 제15조)	- 팀 단위 조직 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임명(약 220명) - 법무Compliance팀, 전사 자율준수 실천조직 운영
2022. 3.	준법경영가이드 개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5조)	- 당사와 관련 있는 법령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및 업무처리 기준 설정
2022. 1. ~ 3.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실 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3장제3조제(4)항)	- 임직원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완료 (약 3,30 0명)
	외부업체 대상,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실시 (윤리규범실천지침 제1장제1조제(3)항)	- 외부업체(협력회사 포함)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 완료 (약 170개사)
2022. 4.	연결내부회계관리(윤리/준법경영 분야) 실 시	- 당사의 자회사와 연결내부회계(윤리/준법경영 분야) 관리 실시
2022. 5.	이해충돌방지법 대응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분석 및 당사 관련 규정 개정(법무법인 자문)
2022. 3. ~ 5.	전사 위험평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2조)	-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 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시스템 도입)
2022. 6.	윤리/준법보고서 발간	- 당사 컴플라이언스 활동 계획 및 실적을 보고 서 형태로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당사 윤리/준법 경영 규정 근거)
2022. 7.	자율준수간담회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4조)	-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대상, 유관 주요법 령 안내(약 170명)
2022. 7. ~ 8.	서면점검 실시 (준법통제기준 제17조)	- 고위험군 대상, 법령(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 급, 개인정보 등) 별 서면점검 질의서 답변에 대 해 특이사항 없음

#4) 공시(사업보고서) -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_22.6.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	LIG넥스원(주) 2022년 상반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2. 주요내용	2022년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Compliance 역량강화 - 자율준수 활동 조직 운영 ·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진행 · 자율준수 실천리더/실천자 선정 및 협의회 진행 - 준법경영가이드 개정 - 윤리·준법경영 규정 개정 및 보고서 발간 - Compliance Communication 강화 ○ Compliance 인식제고 - 자율준수 의식 전파/교육 - 자율준수 교육 - Compliance News 게재 ○ Compliance 위험관리 - 전사 대상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팀단위 조직별 위험등급 지정
3. 결정일자	2022-06-22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상기 3항의 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관련공시 -

#5) 공시(사업보고서) -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_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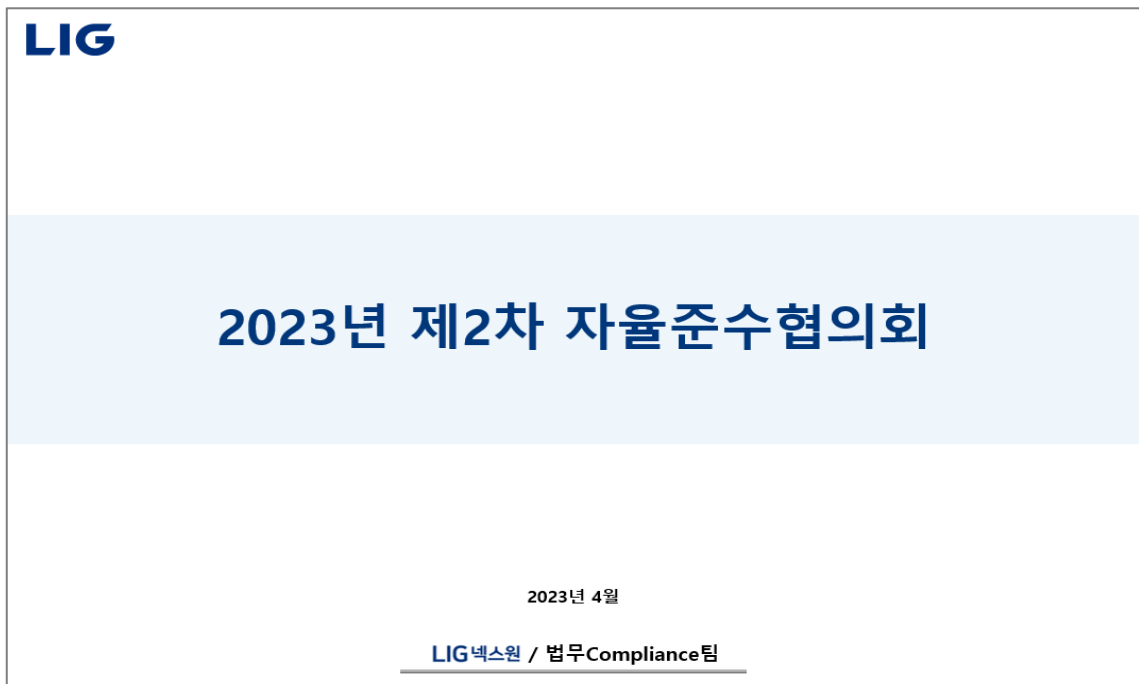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	LIG넥스원(주) 2022년 하반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2. 주요내용	2022년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 ○ Compliance 역량강화 - 자율준수 활동 조직 운영 · 자율준수협의회 진행 · 부서 자율준수실천자 활동 강화 - 윤리경영가이드 개정 및 윤리·준법경영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정 - 협력회사 대상 "당사 윤리·준법경영 실천 인식 수준" 평가 설문 ○ Compliance 인식제고 - 자율준수 의식 전파 - 자율준수 교육 - Compliance News 게재 ○ Compliance 위험관리 - Risk Pool도출 및 위험군 선정 - 서면, 현장점검 및 Feedback
3. 결정일자	2022-12-1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상기 3항의 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관련공시 -

5) 회사는 준법지원인과 회사 임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문기구)를 운영함

※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

- 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본방침 제시
- ②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하여 논의/권고 및 자문
- ③ 기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대한 방향제시 등

#1) 자율준수협의회 보고자료



2. 내부 통제

2.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1)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사가 직면한 부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함
- 2)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함

#1) 준법통제기준 제 12 조

제 12 조 법적 위험의 평가

- (1)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계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제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 (2)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 위험평가 결과 보고서

	담 당	팀 장	실 장
결 재			



2022. 5. 11.

'22년 전사 위험평가 결과 보고

1. 목 적
 - 가. 당사 준법통제기준*에 의거, 주요 법적 위험행위를 유형화하고, 자율준수실천조직별 법적 위험을 검토하여 Legal Risk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 나. 자율준수실천조직별로 유관 법령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조직별 법률 위험에 적합한 교육 및 점검 등의 통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 첨부 1. 관련근거 참고
2. 경 과

가. 조직별 자율준수실천자 지정 : '22 2

2.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개선

- 1) 준법지원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1년 1회)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함

#1) 준법통제기준 제 17 조

제 17 조 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

- (1) 준법지원인은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 (2) 준법지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준법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점검이 있다.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9 조

제 19 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주관부서 모니터링]

- 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주관부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 10 조 제 3 항

제 10 조 내부 점검 및 모니터링

- ③ 부패방지조직은 회사 임직원의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준법통제기준 제 21 조

제 21 조 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판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2)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4)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법적 위협의 평가 및 관리체계·준법점검 및 보고체계·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체계·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준법통제기준 제 22 조

제 22 조 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 (1)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 (2)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6)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27 조

제 27 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성 평가]

- 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성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당사 규정의 적정성, 충분성 및 실효성에 대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선함

- ① 청탁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을 제정함(`18. 4. 9.)
- ② 청탁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을 개정함(`19. 2. 1.)
- ③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개정(`22. 5. 19.)

#1)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개정표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정 2018. 4. 9
개정 2019. 2. 1
개정 2022. 5. 19

제 1 장 총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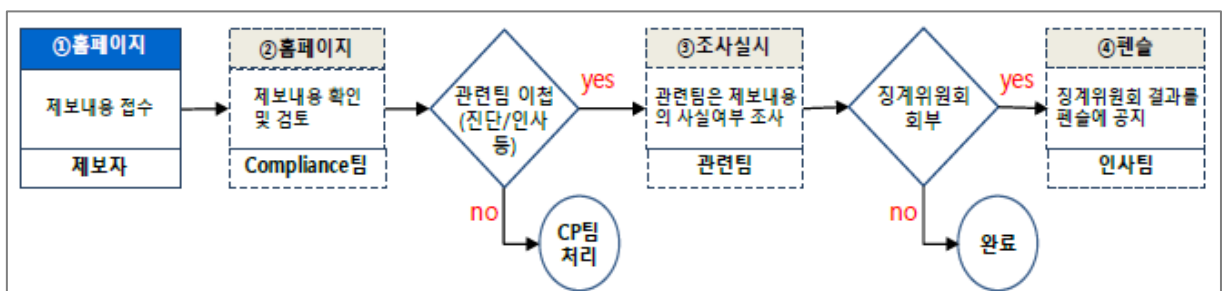
제 1 조 목적

① LIG넥스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기준을 확립하고

2.3. 제보 조사 절차

1) 제보는 준법지원인 혹은 Compliance 담당자에게 전화,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인트라넷 내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부패 혐의에 관해 사건을 조사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음

[조사 process]



- ① 법무 Compliance 팀은 신고센터,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제보를 접수
- ② 법무 Compliance 팀은 제보된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이첩
 - ※ 회사는 신고센터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보사항을 전산으로 관리
- ③ 관련부서는 제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파악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④ 법무 Compliance 팀은 제보 처리결과를 제보자가 원하는 방식(홈페이지, 이메일 회신, 통화 등)으로 제보자에게 전달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신고센터 - 제보확인하기

윤리/준법	상생경영	환경경영	인권/근로자	사회공헌	품질 경영
윤리경영철학		규정	활동	신고센터	

정당한 제보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알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는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했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보하기](#)
[제보 확인](#)

윤리/준법	상생경영	환경경영	인권/근로자	사회공헌	품질 경영
윤리경영철학		규정	활동	신고센터	

제보내역 확인

- 제보 등록 시 회신방법을 '홈페이지 확인'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 요청을 한 경우, 제보 시 등록한 정보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메일		@		직접입력 ▼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조회](#)
[돌아가기](#)

2.4. 감사실/감사위원회

- 1) 감사실장은 법조인(검사) 출신의 고위급 임원으로, 감사실의 정기 감사, 특별 감사 등의 감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실의 모든 직원은 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이수함
- 2) 감사실은 감사위원회(이사회 내 독립적인 감사에 관해 책임지는 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함

#1)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 13 조

제13조(감사결과보고) 감사인은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를 종료하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시점으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5. 부패 관련 사건 조사

- 1) 회사는 부패 사건 조사에 있어 적절성을 보장함
- 2) 회사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3) 제보자, 조사를 받는 사람, 혹은 사건 관련자는 조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회사 내 독립적인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2.6. 제보 조사의 결과

- 1) 부패와 관련된 제보의 경우, 준법지원인은 부패 사건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관련 당국에 신고할 책임이 있음
- 2) 2022 년 회사의 제보는 아래와 같음

신고 건수(내부고발 포함)	11
조사 착수 건수	9

※ 신고 건수 중 2 건은 단순 문의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음

3. 임직원 지원

3.1. 부패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요

- 회사는 매년 최소 1 시간 이상 임직원에게 윤리/준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함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6 조

제 16 조 [교육 실시]

-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자율준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7 조

제 17 조 [교육 내용]

자율준수 관리자는 임직원의 법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회사는 모든 운영 국가에 적절한 언어를 통하여 전사 임직원을 대상(이사회 포함)으로 하는 정기교육, 신규입사자 교육, 고위험군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준법교육을 실시함

#1) 준법통제기준 제 14 조

제 14 조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 준법지원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준법(Compliance)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 준법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준법교육
2. 신규입사자 준법교육: 신규채용(신입/경력)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준법교육
3. 특별 준법교육: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준법교육

- 교육 내용은 회사의 윤리/준법경영, 청탁금지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회사 제보시스템 이용방법(제보 옵션), 부패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함
-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교육 종료 후 법무 Compliance 팀은 교육 대상자와의 인터뷰, 설문지 등을 통해 교육 난이도를 조절하고 교육 내용을 개선함

3.2. 임직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1) 회사는 위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교육을 설계하고 수행함

※ 2.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1), 2) 참고

2) 고위험조직(마케팅, 영업, 계약, 영업 등) 의 경우, 회사는 매년 해당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

#1) 2022 년 특별준법교육자료



3) 중간관리자의 경우, 매년 팀원이 윤리적 딜레마 혹은 법률위반과 같은 상황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회사는 관련 교육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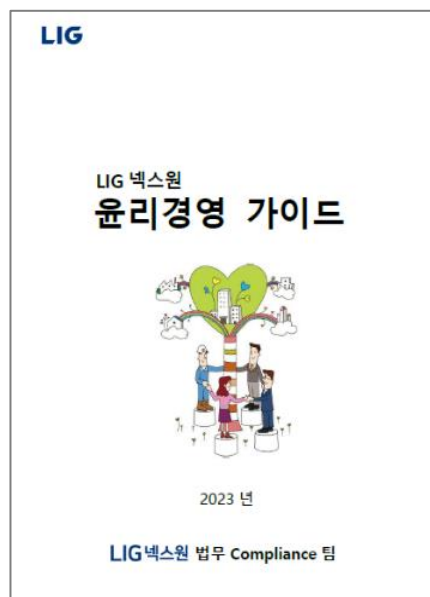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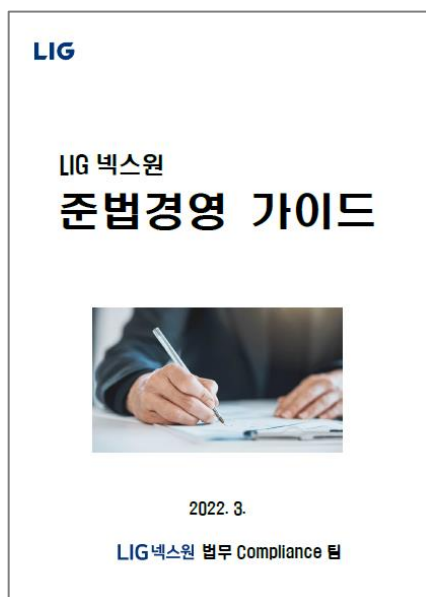
4) 이사회 의 경우, 회사의 의사 결정 및 윤리기준 설정하고 최고 수준의 윤리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실시함

5) 현지채용인인 경우 영어로 교육을 실시함(필요 시 서면교육 수행함)

6) 또한, 회사는 매년 윤리/준법경영가이드를 개정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함

7) ※ 가장 최근 개정은 2023 년 2 월임

#1) 윤리/준법경영 가이드



3.3. 부패방지 촉진을 위한 임직원 포상

- 1)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 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에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음

#1) 준법통제기준 제 23 조

제 23 조 임직원의 포상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28 조

제 28 조 [인센티브 등]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범적으로 자율준수를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자나 부서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3.4.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한 임직원과 제보자의 보호

- 1) 회사는 홈페이지, 규정 등을 통하여 뇌물 제공, 부정청탁 등의 부패행위를 거부하거나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직원이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명시함
- 2) 회사는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제보에 따른 사실확인, 징계 등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제보자가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함

#1)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 11 조

제 11 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 ③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신고내용, 신고자의 신상, 신고에 포함된 다른 임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규정 등에 따라 뇌물 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거부로 인하여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뇌물 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거부하거나 이를 신고한 제3자가 이로 인하여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홈페이지 - 윤리/준법 - 신고센터

제보자 보호 정책

•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비밀 보장
- 제보자의 신분 누설 및 제보자 색출행위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 (회사의 손실이 예견된다 할지라도)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 보호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의 신분 보장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의 신분 누설 및 신분 색출행위 금지
- 비윤리적 행동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 당사는 뇌물 및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에서의 Compliance(법무실)를 시행하고 있으며, 뇌물 및 부패혐의 또는 사건을 추적/조사/대응하는 정도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음

- 3) 제보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경우 법무 Compliance 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함

#1) 윤리규범 실천지침 별첨 5

내부 제보절차

- 내부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제보사실은 사실확인, 징계 등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내부제보자가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보복,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내부제보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3.5. 제보 채널

- 1) 제보는 준법지원인 혹은 Compliance 담당자에게 전화,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인트라넷 내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가능함
※ 2.3. 제보 조사 절차 참고
- 2)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제보 채널)와 고충상담창구(상담 채널)를 한국어와 영어로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익명으로 신고나 상담이 가능함

#1) 홈페이지 - 윤리/준법 - 신고센터

제보(신고) 내역 작성	
익명여부	☐ 실명 ☒ 익명
이름	
회신방법(택1)	☒ 이메일 ☐ 전화 ☐ 홈페이지확인 ☐ 회신불필요 @ 직접입력 ▼
제목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Report Form	
Reporter	☐ Name ☒ Anonymity
Name	
How to get a Reply(option)	☒ E-mail ☐ Telephone ☐ View on Home Page ☐ No Reply needed @
Subject	Enter the subject
	Enter the content

#2) 고충상담창구

상담 내역 작성	
익명여부	☐ 실명 ☒ 익명
이름	
회신방법(택1)	☒ 이메일 ☐ 전화 ☐ 홈페이지확인 ☐ 회신불필요 @ 직접입력 ▼
고충유형	☒ 부당특약 설정요구 ☐ 기술자료 부당요구 ☐ 부당한 경영간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한 감액 ☐ 기타
제목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Help Request Form	
Reporter	☐ Name ☒ Anonymity
Company (Name)	
How to get a Reply(option)	☒ E-mail ☐ Telephone ☐ View on Home Page ☐ No Reply needed @
Request Type	☒ Unfair request for clauses in contracts ☐ Unfair request for disclosure of technical data ☐ Unfair business intervention ☐ Unfair pricing ☐ Unfair discount ☐ Others
Subject	Enter the subject

4. 이해상충

4.1. 이해상충 방지 규정

- 1) 회사는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내외 법인, LIG 넥스원과 거래하는 독립된 제 3 자(투자회사, 협력회사, 컨설턴트, 대리인, 중개인 등), 그리고 소속 임직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모든 이사회 구성원 포함)에게 회사와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

#1) 윤리규범 제 4 장 제 5 조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LIG넥스원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5. 회사와의 이해상충 금지

(1)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금지한다.

#2)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 4 장 제 5 조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5. 회사와의 이해상충 금지

(1)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전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직무 등을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별첨4. 이해관계 신고서).

#3)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 4 조의 2

제 4 조의 2 이해상충 등

① 회사의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거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 2) 회사 임직원 개인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의거하여 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법무 Compliance 팀에 신고하여야 함

- ① 회사의 임직원이 거래상대방(법인인 경우 대표, 직무담당자)과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 ② 회사의 임직원, 그 가족(「민법」 제 779 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이 방산, 공공조달과 관련한 정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 ③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상대방 및 이와 관련된 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 ④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상대방 및 이와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 주주, 파트너, 컨설턴트, 대표, 대리인, 사외이사 등이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우
- ⑤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회사 임직원 또는 회사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또는 그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방지법” 제 9 조 제 1 항에 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1) 윤리규범 실천지침 별첨 4 이해관계 신고서

○ 회사의 임직원이 아래 열거한 바와 같이 개인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규범실천지침 제4장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 4 조의 2

제 4 조의 2 이해상충 등

- ① 회사의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거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1. 회사의 임직원이 거래상대방(법인인 경우 대표, 직무담당자)과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2. 회사의 임직원, 그 가족(「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이 방산, 공공조달과 관련한 정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3.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상대방 및 이와 관련된 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상대방 및 이와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 주주, 파트너, 컨설턴트, 대표, 대리인, 사외이사등이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우
 5. 회사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회사 임직원 또는 회사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또는 그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4.2. 이해상충 관리 절차

- 1) 회사의 임직원은 인트라넷, 서면 등을 통해 법무 Compliance 팀에 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1) 인트라넷 - 컴플라이언스 - 이해관계 신고서

[illegible]

#2) 윤리규범 실천지침 별첨 4 이해관계 신고서

1. 신고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2. 신고내용	
구 분	내 용
이해상충 구분	
이해상충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소속/직급 : 신고자와의 관계 :

3. 직무수행 범위	
구 분	내 용
직무유형	
거래규모	

신고일자 : 년 월 일
신고자 : (인)
담당임원 : (인)

2) 이해관계 신고서는 내부 시스템에 전산으로 기록함

#1) 인트라넷 - 컴플라이언스 - 이해관계 신고서 목록

3) 법무 Compliance 팀은 이해상충의 정도,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회신하고, 임직원은 해당 의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1)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 4 조의 2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임직원은 부패방지조직에 이해관계 신고를 하여야 하며(윤리규범 실천지침 별첨4 양식에 따름), 부패방지조직의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회사는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음

#1) 윤리규범 실천지침 전문

4. 징계규정

(1) 임직원이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하였거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이 발견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사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2)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회사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당사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2)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제 12 조

제 12 조 처벌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규정을 포함한 회사의 내규, 지침 등을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해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하며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3) 징계심의지침

징계사유		기준
1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외 법규 및 회사의 사규를 위반한 경우 (1)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위반한 경우: 별첨[1] 참조 (2) 부패방지법령 및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별첨[2] 참조	1-5

4.3. 공공부문 출신 직원 고용 정책

- 1)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여 취업심사 대상 정치인, 전현직 공무원에게 법정기간(3년) 취업을 제한함. 단 취업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함

#1) 공직자윤리법 제 4 장 제 17 조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19. 12. 3.>

#2) 방위사업법 제 59 조의 2

방위사업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65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4.4. 정치인 고용 정책

- 1) 회사는 정치인과 어떤 거래도 맺지 않음

- 2) 국회법에 따라 정치인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음

#1) 국회법 제 29 조의 2



국회법

[시행 2022. 4. 5.] [법률 제18719호, 2022. 1. 4., 타법개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5. 고객 연계

5.1. 후원 및 기부, 스폰서십, 로비

- 1) 회사는 정치적 기부와 로비를 하지 않음
- 2)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후원 및 기부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부패방지 규정 "별첨 1 금품 등 제공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거나, 부패방지 조직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별첨 1 금품 등 제공 가이드라인

금품유형	상세기준	승인 필요여부
위문금품	-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을 얻었을 것 - 대상자에게 부정한 사업상 혜택을 얻기 위해서, 또는 부정한 사업상 혜택에 따른 대가 성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
기부 및 후원활동	-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후원비 제공 및 지원행위를 하였을 것 - 대상자에게 부정한 사업상 혜택을 얻기 위해서, 또는 부정한 사업상 혜택에 따른 대가 성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

- 3) 회사는 업무재량권 규정에 기부금 지출 시 재량권자의 품의를 받도록 규정함

#1) 재량권규정

경비기준 (2023년)									
* 추가예산신청								재량권자	
* 경비지출(건당)									
경비지출 (건당)	3. 경비 D	기부금		이상/건		이상/건		대표이사	경영기획실장
				미만/건		미만/건		부문장 /Center장	경영기획실장
		기타		이상/건		이상/건		대표이사	경영관리본부장
				미만/건		미만/건		부문장 /Center장	경영관리본부장

※ 기타 항목 중 분야별재량권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분야별 재량권에 따름
 ※ 1억 이상의 기부금은 이사회(ESG위원회) 승인 사항임 (ESG위원회 규정 제 8조)

- 4) 회사는 기부금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2016 년)/개정(2023 년)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부 및 후원에 대한 철저히 관리 감독함

#1) 기부금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기부금 심의 위원회 운영 기준	
표준번호 : NEX1(20) - F - 0106	
제정·개정·폐지권자	정책협력실장
제 정 일 자	2016.05.02
개 정 번 호	2

6. 공급망 관리

6.1. 협력회사 실사 개요

- 1) 구매부서는 공급망 구축 담당부서로서, 모든 협력회사를 선정,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2)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에 근거하여, 구매부서는 신규 협력회사 선정, 혹은 기존 협력회사 재계약, 비즈니스 상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 협력회사 실사를 수행하여 법무 Compliance 팀에 자체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법무 Compliance 팀은 해당 평가결과를 재검토하여 협력회사의 부패위험의 등급 분류 및 해당 업체의 선정, 재선정, 계약해지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7 조

제 7 조 제3자의 선정 및 실사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를 선정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기초정보를 확인하여 부패위험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제3자에 대한 기초정보의 확인은 별첨 2에서 규정한 '제3자 실사질의서'의 양식에 따른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상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제3자의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자체평가는 별첨 3에서 규정한 '제3자 체크리스트'의 양식에 따른다.
- ③ 회사의 임직원은 제3자 선정과 관련하여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제3자의 기초정보 및 자체평가결과를 부패방지조직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패방지조직은 해당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제3자의 부패위험의 등급 분류 및 필요한 경우 선정 부적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해당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또한 구매부서는 정기적인 역량평가를 수행하는 때에 부패방지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함

#1) 실사 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국문)

평가 점수 기준					
평가 점수	5점 (매우우수)	4점 (우수)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미실시)
항목별 평가점수 정의	요구항목의 표준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으며 실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	요구항목의 표준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으며 실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나 일부 개선이 요구됨	요구항목의 표준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으며 실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나 전반적 개선이 요구됨	요구항목의 표준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으나 미 이행됨	요구항목의 표준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
평가결과					
요구항목 제목 (Level 1)	평가점수 (1차: 협력업체작성, 2차: UIG역스 작성함)	세부 요구사항요구내용	항목별 가이드	평가근거(협력업체 담당자 작성) *구체적, 기술적 작성상, 관련 근거 정확하게	미흡사항/개선요구사항 (UIG역스원 심사서원 작성)
회사 관리	1. 준법경영 1. 최근 3년 내 불가부정 행위로 제재를 여부: 1점(No) or 0점(Yes) 2. 최근 3년 내 성직사위변조 행위 적발 여부: 1점(No) or 0점(Yes) 3. 최근 3년 내 업무관련 법규위반으로 임직원 처벌 이력 여부: 1점(No) or 0점(Yes) 4. 최근 3년 이내 국제징소동정 등 정부기관의 과태료/벌금 부과 여부: 1점(No) or 0점(Yes) 5. 현재 제류중인 업무관련 소송 유무: 1점(No) or 0점(Yes)		1. 최근 3년 내 불가부정, 성직사위변조, 법규위반, 정부기관의 과태료/벌금 부과, 제류중인 소송유무를 확인한다.		

6.2. 협력회사 대상, 부패방지 정책 및 절차 수행 요구

- 1) 회사는 협력회사에게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간담회 시 적절한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1) 협력사 간담회



#2) 협력사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서

LIG Nex1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서

와 LIG넥스원주식회사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본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사와의 거래에서 기본 법규준수는 물론 어떠한 불공정 거래, 부정·비리행위 및 품질 증빙 자료(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하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3.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귀사의 임직원에게 향응·접대 및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귀사의 임직원이 계약상 요구되는 것 이외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귀사와의 거래에서 귀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를 제의 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귀사의 법무/Compliance팀으로 제보하겠습니다.
6.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 여부에 대한 귀사의 조사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 조사 목적의 서류)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하겠습니다.
7.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한 LIG넥스원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 귀사와의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서약하기

※ 서약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약이 완료됩니다.

- 2) 또한, 회사는 협력회사와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력회사 및 제 2 차 협력회사에게도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토록 요구함

#1)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 1 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UG넥스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 용역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 · 용역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방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음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입찰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UG넥스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입찰을 주도한 자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합의를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당첨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거나 실제 이익을 제거하지 않는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음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UG넥스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음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감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권익을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 입찰 및 계약조건에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음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음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UG넥스윌㈜의 처분을 받은 자는 UG넥스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만 · 형사상 이익을 제거하지 않는다.

제 4 조 (계약해지 등)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6.3. 협력회사의 정보 및 제재

- 1) 협력회사와 관련된 비윤리적, 부패 관련 사건 없음

7. 제3자(대리인, 중개인, 합작투자 등)

7.1. 제 3 자 관련 정책

- 1) 회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인, 합작투자 등을 포함한 모든 제 3 자에게 부패방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함
- 2) 회사는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을 통하여 제 3 자 정의 및 선정, 관리에 대해 규정함

※ 제 3 자

: 협력회사, 컨설턴트, 영업 대리인, 절충교역 파트너, 합작투자 파트너 및 컨소시엄 파트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를 위하여 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및 그 소속 임직원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6 조

제 6 조 [임직원의 의무사항]

- ① 회사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제3자에게도 부패방지규정을 고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7 조

제 7 조 [제3자의 선정 및 실사]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를 선정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기초정보를 확인 하여 부패위험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제3자에 대한 기초정보의 확인은 별첨 2에서 규정한 '제3자 실사질의서'의 양식에 따른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상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제3자의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자체평가는 별첨 3에서 규정한 '제3자 체크리스트'의 양식에 따른다.

#3)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제 8 조

제 8 조 [제3자와의 계약체결 및 관리]

- ① 회사의 임직원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의 유형 및 부패방지조직의 검토의견상 해당 제3자의 부패위험 등급에 따라 계약서에 부패 방지와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 ② 제3자의 유형 및 부패위험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부패방지 조항은 별첨 4에서 규정한 '표준 부패방지조항'에 따른다.

7.2. 제 3 자 실사 개요

- 1) 회사는 제 3 자의 (재)고용 및 제 3 자와 비즈니스 상 변화가 있는 경우 실사를 실시하며, 제 3 자 실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제 3 자를 구분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함
- 2) 회사는 모든 제 3 자에게 부패방지 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요구함
- 3) 제 3 자 실사를 위하여 회사가 제 3 자에게 요청하는 제 3 자 실사질의서는 제 3 자와 공무원과의 관계, 실소유자, 조직구성원 등을 포함하며, 회사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함으로써, 제 3 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별첨 2. 제 3 자 실사질의서

제3자 실사질의서			
당사 <u> (제3자명) </u>은 LIG넥스원 주식회사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LIG넥스원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서, LIG넥스원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부패방지활동 상 통제 및 관리의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당사와 관련한 다음의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			
제3자 정보	회사명*		
	국적*		
	업종* (보유자격 및 면허)		
	주소*		
	전화*/팩스*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회사이력*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Tax Code)		
	사업수행 국가		
은행정보	주거래 은행 명칭/주소/연락처*		
	본 사업의 지급관련 은행계좌*		
회사 소유권 및 경영*	정부공무원이 당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 YES ☐ NO
	당사의 임직원 중 정부기관의 직무 및 직위를 보유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 YES ☐ NO
	- 해당 직원의 직위 및 성명		
	당사의 임직원 중 정당, 정치기관의 직무 및 직위를 보유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 YES ☐ NO
	- 해당 직원의 직위 및 성명		
준법	당사는 내부/외부 감사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YES ☐ NO
	당사는 부패방지 정책,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YES ☐ NO
	당사는 지난 5년간 부패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형사고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		☐ YES ☐ NO

#2)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별첨 3. 제 3 자 체크리스트

제3자 체크리스트

제3자명 (거래대상자명)	
총점 (체크리스트 작성결과)	

※ 별첨2 양식에 따라 제3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한 실사정보 및 실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주시오. 그 다음, YES를 선택한 항목들의 경우 맨 오른쪽 칸에 기재된 점수를 전부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가 수행될 국가의 부패 인식지수(CPI)가 몇 점입니까?			
	- 70점 이상	YES ☐	NO ☐	1점
	- 50점 이상 70점 미만	YES ☐	NO ☐	2점
	- 50점 미만	YES ☐	NO ☐	3점
2	제3자와 최초 거래입니까?	YES ☐	NO ☐	1점
3	'제3자 실사 질의서'에 대하여 제3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정보가 19개 문항 중 몇 개정도 있습니까?			
	- 1개 이상 5개 미만	YES ☐	NO ☐	1점
	- 5개 이상 10개 미만	YES ☐	NO ☐	2점
	- 10개 이상	YES ☐	NO ☐	3점
4	공무원, 발주처 등으로부터 해당 제3자를 사용하도록 요청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YES ☐	NO ☐	2점
5	제3자가 부패방지법령 및 당사에서 제시한 부패방지 규정의 준수를 꺼려합니까?	YES ☐	NO ☐	3점
6	제3자가 본건 업무수행과 관련한 실적, 필요 면허 및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습니까?	YES ☐	NO ☐	2점
7	제3자가 관련 지식, 업무성과, 임직원의 전문성보다 정부 인맥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친분 또는 영향력을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습니까?	YES ☐	NO ☐	2점
8	제3자가 뇌물 지급, 뇌물 수수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에 관한 수사, 기소 등의 전력이 있거나 이러한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YES ☐	NO ☐	3점
9	제3자가 서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YES ☐	NO ☐	3점

7.3. 제 3 자 계약 상 부패방지조항

- 1)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별첨 4. 의 규정에 따라 제 3 자와의 계약서에 부패방지조항을 삽입함
- 2) 또한 부패방지조항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계장부 및 기록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함

※ 대리인 및 중개인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비율(사업의 난이도와 규모 등을 고려)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대리인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함

#1) 부패방지법령준수규정 표준 부패방지조항 내용

Korean
제00조 법률준수 (계약상대방)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하며 서약한다: (1) (계약상대방)의 재산, 경력, 활동 및 자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회사]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모든 중요한 점에서 완전하고 진실되며, 부정확하거나 허위가 아니다. (2) (계약상대방)은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사기, 부패, 조세포탈, 절도, 증권범죄, 또는 계약위반을 포함하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없다. (3) (계약상대방)의 본 계약이행은 (계약상대방) 또는 (계약상대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제에 부합된다.
제00조 부패방지 (1)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임직원이 현재 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어느 시점이라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결정권을 갖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①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소속인원 및 정부의 공식 대리인 ②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직원 ③ 공공 국제단체의 임직원 ④ 정치인, 정당 직원 및 공직 후보자 ⑤ 공무를 수탁받은 자 (2)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조 제1항 각 호의 자를 비롯하여 기존 또는 향후 거래상대방 등에게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의 지급을 제의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3) (계약상대방)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이하 '부패방지법령') 및 [회사]의 부패방지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4)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의 효력기간 내는 물론,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회계장부 및 기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세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계약상대방)의 [회사]의 부패방지규정 및 부패방지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회계장부 및 기록 등을 조사 또는 복사할 수 있다. (6)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알게 되거나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7) (계약상대방)이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위반여부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금지급 의무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8)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방)이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본 조 제5항에 따른 [회사]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회계장부, 기록 등의 조사 또는 복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③ 기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9) (계약상대방)의 본 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벌금, 손해배상 등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4. 제 3 자의 정보 및 제재

- 1) 회사의 대리인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공개가 불가함
- 2) 제 3 자 관련 제재 사항 없음

8. 절충교역 - N/A

- 1) 회사가 외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절충교역을 실시한 적은 없음

9. 시장 관리

9.1. 고위험 시장 위험관리절차

- 1) 회사 준법경영가이드(‘23년 개정)에 의거하여, 사업담당자가 사업 수행 시 고위험시장에 대한 부패위험을 인지한 경우 법무 Compliance 팀으로 즉시 연락해야 하며 법무 Compliance 팀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부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사업담당자가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 회사 준법경영가이드(부패방지편 2023년도 개정판) p.22

4) 고위험시장 사업 수행과 관련한 준수사항(위험신호)

- "위험 신호"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실, 사건 또는 일련의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패 및 뇌물과 관련한 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 Compliance 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등 관련 지표가 낮거나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사업적 평판이 좋지 않은 경우
 - 거래 상대방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공식적 혹은 비공식 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혹은 벌금, 과태료 등을 포함한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형사 집행 조치 또는 민사 소송을 당한 경우
 -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다른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공무원과 가족관계 혹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실사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혹은 실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질의서와 불일치 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속한 회사의 실소유자의 신원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FCPA, UKBA, 또는 기타 유사한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업무와 비교하여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익명의 타인과 이익을 나누도록 요청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서면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다른 우려사항이 발생한 경우

9.2. 회사 정보

1) 회사는 주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보함

#1) 공시(사업보고서) - 주주에 관한 사항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엘아이지	본인	보통주	10,200,000	46.36	9,239,461	42.00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
구 ■■■	특수관계인	보통주	60,000	0.27	60,000	0.27	-
구 ■■■	특수관계인	보통주	40,000	0.18	40,000	0.18	-
구 ■■■	특수관계인	보통주	1,440	0.01	1,440	0.01	-
구 ■■■	특수관계인	보통주	960	0.00	960	0.00	-
구 ■■■	특수관계인	보통주	360	0.00	360	0.00	-
구 ■■■	특수관계인	보통주	240	0.00	240	0.00	-
유 ■■■	특수관계인	보통주	30,000	0.14	0	0.00	장내매도
김 ■■■	특수관계인	보통주	5,215	0.02	5,215	0.02	-
이 ■■■	특수관계인	보통주	6,000	0.03	6,000	0.03	-
이 ■■■	특수관계인	보통주	2,500	0.01	2,500	0.01	-
박 ■■■	특수관계인	보통주	840	0.00	0	0.00	임원퇴임
박 ■■■	특수관계인	보통주	1,500	0.01	0	0.00	특수관계해소(-)
최 ■■■	특수관계인	보통주	1,584	0.01	1,584	0.01	-
천 ■■■	특수관계인	보통주	300	0.00	1,900	0.00	장내매수
계		보통주	10,350,939	47.05	9,359,660	42.53	-
		우선주	-	-	-	-	-

-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수 대비 비율임. (2022년말 : 보통주 22,000,000주)

-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주식은 소유에서 제외함.

- 2) 회사는 모든 관계회사, 합작회사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회사와 관련 있는 회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1) 공시(사업보고서) - 관계회사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엘아이지정밀기술 주식회사	2000.10	대한민국 대전	정보통신기기 제조 · 판매업	26,431	100% 지분보유	X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2	LIG넥스원(주)	215-86-35051
		(주)이노와이머리스	120-86-12537
비상장	20	(주)LIG	220-87-08456
		(주)휴세코	114-81-97424
		(주)LIG시스템	132-81-58074
		LIG풍산프로테크(주)	505-81-61549
		엘엔지옵트로닉스(주)	220-88-32249
		(주)서빅	214-88-07070
		(주)에카투어	211-87-15759
		(주)휴세코부동산중개	511-81-25742
		엘아이지정밀기술(주)	220-81-98505
		(주)케이제이렌탈	210-81-69852
		(주)화인	307-81-01438
		Accuver APAC Limited	해외법인
		Accuver Americas, Inc.	해외법인
		Accuver Co., Ltd.	해외법인
		Accuver EMEA Limited	해외법인
		Accuver EMEA sp. z o.o.	해외법인
		Innowireless India Services Private Limited	해외법인
		(주)큐셀네트웍스	451-86-00895
		Accuver Shanghai Co., Ltd.	해외법인
		PT.SINARMAS HUSECO IN DONESIA	해외법인

- 3) 회사는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 및 매출액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1) 공시(사업보고서) - 재무제표 주석

18. 수익

(1) 당기 및 전기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21(당) 기	제 20(전) 기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1,983,030,992	1,758,948,851
한 시점에 수익 인식	230,709,705	49,381,193
기타매출	2,421,422	11,689,969
합 계	2,216,162,119	1,820,020,013

(2) 당기 및 전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21(당) 기	제 20(전) 기
A고객	1,089,615,435	1,047,048,073
B고객	265,822,062	239,625,046
합 계	1,355,437,497	1,286,673,119

(3) 당기 및 전기 중 지역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21(당) 기	제 20(전) 기
국내	1,810,201,153	1,737,405,485
해외	405,960,966	82,614,528
합 계	2,216,162,119	1,820,020,013

10. 2022년도 주요 컴플라이언스 월별 활동

일시	활동
1월	•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 '22년 윤리·준법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수립 • '22년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실천의지 표명을 위한 CEO Message 전파 • 임직원,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실시 • 협력회사 대상, 윤리/준법 실천서약 실시 • 윤리/준법경영 캠페인 실시 • 한국투명성기구 주관, 청렴 국방을 위한 토론회 참석 • 법무Compliance팀,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2월	• 자율준수실천조직 구성
3월	• 위험평가 실시 • 자율준수실천자 간담회 개최 • 윤리/준법경영 가이드 개정
4월	• 위험평가 실시 • 법무Compliance팀,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5월	• 윤리/준법경영 보고서 발간
6월	• 방위사업청 주관, '22년 '청렴 방위사업 세미나' 참석 • 이사회 보고
7월	• 법무Compliance팀,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서면점검 실시 • 자율준수실천자 간담회 개최
8월	• 서면점검 실시
9월	• 윤리/준법경영 캠페인 실시
10월	• 이해상충 예방 및 점검 • 법무Compliance팀,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현장점검 실시
11월	• 현장점검 실시
12월	• 이사회 보고

일시	활동
23년 1월	•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 '23년 윤리·준법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수립 • '23년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실천의지 표명을 위한 CEO Message 전파 • 임직원,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실시 • 협력회사 대상, 윤리/준법 실천서약 실시 • 윤리/준법경영 캠페인 실시 • 법무Compliance팀,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2월	• Raytheon사 Compliance 담당자 내방 미팅 • 윤리·준법경영가이드, 자율점검체크리스트 개정 • 자율준수실천자 간담회 실시
3월	• 방위사업청 "찾아가는 청렴소통 컨설팅(간담회)" 참여 •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 워크숍" 참석
4월	• 법무Compliance팀,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위험평가 실시
매달	• Compliance News 게재
필요시	• 신규입사자 교육 • 영입임원 교육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 내 활동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11. 기타

1) 회사는 ESG 평가 3년 연속 '종합 A 등급'을 받음

#1) 서울경제, LIG 넥스원, ESG 평가 3년 연속 '종합 A 등급'



2) 또한 회사는 한국투명성기구 주관하는 청렴국방을 위한 토론회, 청렴방위사업세미나,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등 청렴 관련 회의체에 참석하는 등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2. List of Evidence & Sources

No.	Type	Name	Link
01	Document	윤리/준법경영 보고서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ule.do
02	Webpage	CEO 메시지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philosophy.do
03	Document	윤리규범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ule.do
04	Document	윤리규범실천지침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ule.do
05	Document	준법통제기준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ule.do
06	Documen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ule.do
07	Document	부패방지법령 준수규정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ule.do
08	Webpage	공시 (사업보고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0276
09	Webpage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현황 (안내공시)_22.6.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622800212
10	Webpage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현황 (안내공시)_22.12.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9800491
11	Webpage	상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
12	Webpage	신고센터	http://www.lignex1.com/web/kor/management/reportCenter/guided.do
13	Webpage	협력업체구매포탈	https://nisp.lignex1.com/noauth/index.jsp
14	Webpage	고충상담창구	https://www.lignex1.com/web/kor/management/partnersReport/guided.do
15	Webpage	공직자윤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02&lsiSeq=230789#0000
16	Webpage	방위사업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01&lsiSeq=216195#0000
17	Webpage	국회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D%9A%8C%EB%B2%95#undefined

상기 표지의 저울 이미지는 Flaticon.com의 자료(아이콘 제작자: Freepik)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